

## 구강 스프레이 제품 등록 지침

(2023년 10월 개정)

1. **구강 스프레이 제품**은 "구취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을 기술하거나 치료, 완화, 치유 또는 항균 효과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에는 병원균, 미생물, 바이러스 또는 염증 유발의 방지, 억제, 사멸 또는 퇴치에 대한 표시, COVID-19, 구강 · 인후 질환, 호흡기 질환 또는 구강 · 인후의 보습 효과와 관련된 표시 등이 포함된다.

2. **구강 스프레이 제품의 용기 디자인**: 인후 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사 노즐이 부착된 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3. 구강 스프레이 제품 명칭:

3.1 핑거루트, 안드로그래피스 파니클라타 또는 프로폴리스와 같은 약용 허브 성분을 함유한 구강 스프레이 제품은 구취 제거 제품임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명명해야 한다. 화장품 명칭에 허브 성분 명칭을 포함시킬 수 있다(예: 프로폴리스 리프레싱 구강 스프레이, 구취 제거용 프로폴리스 구강 스프레이 등).

3.2 화장품 명칭의 일부로 "아이(KID)" 또는 "아이들(KIDS)"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상으로 하는 아동은 6세 이상이어야 하며 알코올 함량 등 제품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6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라벨에 포함시켜야 한다.

3.3 화장품 명칭의 일부로 "아기(BABY)", "유아(INFANT)", "신생아(NEWBORN)"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 4.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는 다음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1 실제 판매용 제품(실제 용기)의 사진 및 함께 사용하는 기기 또는 부속품(있는 경우)의 사진.

4.2 실제 판매용 제품 라벨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사진. 제품 라벨에는 화장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치료, 완화, 치유 또는 항균 효과가 있다는 등의 유사한 주장을 암시하는 문구나 이미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4.3 병원균, 미생물, 바이러스 또는 염증 유발의 방지, 억제, 사멸 또는 퇴치에 대한 표시, COVID-19, 구강 · 인후 질환, 호흡기 질환 또는 구강 · 인후의 보습 효과와 관련된 표시 등 제품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이 가지거나 치료, 완화, 치유 또는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회사 대표가 서명한 확인서. 이 확인서에는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